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99호 2012. 7. 16.(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57호(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 고시)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58호(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54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6

회							
람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7. 1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사업시행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 구역면적 : 26,609.1 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은돈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컨테이너박스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2년 7월 13일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비고
송도영남 아파트구역	21,680.80	4,840.33	86,883.02	22.33	
	용적율(%)	높이(m)	층수	용도	
	244.65	56.95	-3/20	공동주택 (아파트)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유 형 별	세대수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	비고
59형	79	59.97	20.69	80.66	분양
74형	28	74.98	24.82	99.80	분양
84A형	154	84.98	27.25	112.23	분양
84B형	143	84.99	25.51	112.50	분양
84C형	35	84.99	28.41	113.40	분양
84D형	35	84.95	27.66	112.61	분양
84E형	20	84.98	28.15	113.13	분양
합계	494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정비기반시설 설치(무상귀속)

구분	명칭	위 치		규 모
	류번-번호	시점	종점	면적(㎡)
도로	광로3-6	신흥동광1-1	논현동시계	741.9
	중로2-146	광3-6	소2-33	1,033
	중로3-4	소2-39	소2-39	237.5
	중로3-77	소2-39	소2-32	848.1
	소로2-32	광3-6	청학동327-47	342.3
	소로2-39	중3-4	중3-4	362.9
	소로3-30	광3-6	소2-32	163.1
	소 계			3,728.8
주차장		연수구 청학동 97-1번지 일대		160.2
공원(소공원)		연수구 청학동 96-18번지 일대		1,039.3
계				4,928.3

2)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

연번	토 지				
	동명	지번	지목	규모(면적m ²)	소유자
1	옥련동	319-8	도로	102	인천광역시
2	옥련동	319-11	전	33	인천광역시
3	옥련동	324-4	전	96	인천광역시 연수구
4	청학동	95-8	도로	1,36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				1,592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10. 기타 관계도서 : 생략 (연수구청 건축과에 비치)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7. 1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210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 ~ 79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7.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 동 926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210	신축	2009-07-06	청량산 아래마을에 능이 있었다는 것에 유래하여 제명	연수SQUARE-1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56-33, 356-34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71번길 7	신축	2009-07-09	한나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7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 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20-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안로 5	신축	2009-12-09	주도로 청학로와의 연관성으로 안길을 붙여 도로명 부여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 - 547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2009. 11. 30. 일부개정 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준용
- 법령 오기로 인한 조례 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협의체 구성요건을 명확화 하여 민생안전 지원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변경
 - ※ 2009.11.30.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각 조항이 한 단계씩 뒤로 미뤄짐
 - ☞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로 개정
 - ☞ 제3조제5항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으로 개정
- 대표협의체 구성 자격 조건 중 법령 오기로 인한 근거법령 변경
 - ☞ 제3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고: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Tel. 032-810-7228, Fax. 032-810-72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법」” 을 “「사회복지사업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 ----- ----- ----- -----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구청장이 위원 위촉시 구의회 의원은 2인을 위촉한다. 1. 「사회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생략) ③ ~ ④(생략)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사회복지사업법」 ----- ----- ----- 2.~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 공무원, 지역보건사업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⑥ ~ ⑦(생략)	----- ----- -----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 -----. 2. (현행과 같음) ⑥ ~ ⑦(현행과 같음)
---	---